

제229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10.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 1566호
----------	---------

2019.10.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9. 9. 19.
- 나. 회부일자 : 2019. 9. 23.
- 다. 상정일자 : 2019. 10. 1.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김옥희 행정국장

나.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출연의 대상 :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 2) 출연의 필요성
 -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경쟁력 및 전문성, 차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
 - 나루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
 - 광진문화재단(공연장)의 대외적 신뢰도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 확립을 위한 브랜딩 구축,
 -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의 재단 운영목적의 원활한 달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함.

3) 출연금 결정

-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0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결정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기영)

- 2020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9년 9월 19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9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재)광진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광진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 (재)광진문화재단은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 재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나루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재단(공연장)의 브랜딩 구축,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문화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관련 법률 및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본 동의(안)의 제출은 법적으로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